

### 1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자본잠식 사유 발생시 채무증권 상장폐지 적용방법 개정)
- 나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중대예방조치 기준 명확화)

## 1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3/2/6 개정 · 2023/2/13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☐ 채무증권 상장법인을 자본잠식 사유로 상장폐지하는 경우 자본확충 노력 반영 등 보통주권의 방식을 준용함으로써, 채무증권의 투자자 보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☐ 자본잠식 사유 발생시 채무증권 상장폐지 적용방법(제78조의2)
  - 자본금의 전액 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인정
    - (기존) 감사보고서로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전액 잠식이 확인된 경우 상장폐지
    - (개정)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전액 잠식이 있더라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 해소로 인정
  - 상장폐지 사유 해소 입증기한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전액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감사인의 요건은 보통주권의 방식을 준용
    -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,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등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 해소 입증기한을 다르게 적용
    - 전액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감사인의 요건은 최근 사업연도 말 감사인과 동일할 것
    - 다만, 동일 감사인이 감사 업무 제한 조치, 등록 취소, 업무 정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선임할 감사인의 요건 정의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나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3/2/8 개정 · 2023/3/2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☐ 감시요원의 조치 일관성 및 투자자 예측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대예방조치 기준을 명확화하고, 중대예방조치 대상 계좌 판단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
- ☐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상 규율위원회의 기피제도와 관련하여 소내 '심의 ·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'과 통일성 제고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☐ 중대예방조치 개선방안 반영
  -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 예방조치 기준을 구체화(제2조의2 제2항 제3호)
  - 실무 프로세스와 세칙 내용이 일치하도록 중대예방조치 대상 계좌 판단 주체에 대한 조문 정비(제2조의2 제1항 및 제2항)
- ☐ 규율위원 기피여부의 결정권한 변경(제27조 제4항)
  - 당사자가 규율위원 기피신청 시 기피여부의 결정권한을 위원장에서 위원회로 변경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